

대우해피론 계좌운용규칙

1. 일반적인 매매 및 금융거래규칙

2018년 07월 2일

매매시간		09:00~15:30 (정상거래:매수/매도주문 가능)
		07:30~08:30, 15:30~16:00(매도 주문만 가능)
매매 가능 매체		HTS, 고객센터 주문 등
금융 거래 시간	대출(입금)	08:00~16:00 (RMS이용료(취급시)는 입금과 동시 출금 처리)
	이자(출금)	08:00, 15:30 (전액출금 방식, 이자출금액 부족시 미인출)
	일부,중도상환(출금)	08:00~16:00 (전액출금방식, 부족시 상환불가)
	만기상환(출금)	08:00~16:00 (전액출금방식)
	로스컷 출금	16:00 (전액/일부 출금방식)

거래 가능 종목	코스피,코스닥 상장종목중 일반종목(코넥스 매매 불가)
거래 유형	100% 현금증거금 납부(※ 신용거래/공매도/미수거래 불가)
거래 방식	일반자금 회전대출

매매 거래 금지 종목	매수	보유	보유금지시점	비고
① 권리종목	불가	불가	편입전일	
② 거래정지예정종목	불가	불가	거래정지 전일	
③ 권리락종목 (배당락 제외)	불가	불가	권리락전일 (기준일 2일전)	
④ 감자/합병/분할 종목 등	불가	불가	기준일 2일전	
⑤ 투자경고/위험/단기과열 종목	불가	-		일별조회
⑥ 액면가 50% 이하 종목	불가	-		전일기준
⑦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	불가	-		전일기준
⑧ 소수지점/계좌 거래 집중종목	불가	-		일별조회
⑨ 신규 상장 기업	불가	-		상장일만
⑩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% 이상 종목	불가	-		일별조회
⑪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요구 종목 (이유없는 시세급변만 해당)	불가	-		
⑫ 보호예수 해제 종목	불가	-		5영업일간
⑬ 5일 평균 거래량 1천주 미만 종목 (KOSPI 200, KRX100 해당종목 제외)	불가	-		일별조회
⑭ 권리발생예정종목	불가	-		일별조회
⑮ 금융사 지정 (RMS시스템 제한)	불가	-		지정 즉시

■ 대출신청 전에 보유불가 종목 기보유시, 보유불가 종목 매도 후 대출신청 가능

■ 대출 신청 전에 매수불가 종목 기보유시, 대출은 가능하나 해당 종목은 대출가능금액 평가에서 제외됨.

■ 대출 실행 후에는 주식(현물포함) 입출고 불가능 (단, 자사 계좌간 입고는 가능)

■ 포트폴리오 제한 : 동일종목당 최대 매수 가능 금액은 매수시점 계좌평가금액의 50%이하로 제한

■ 소형주 제한 : 시가총액 500억 이하 종목은 대출 전채고객이 해당 종목의 주식 편입비율이 총 상장 주식수의 2%초과 보유금지

■ 유동성 제한 : 종목별 5일 평균 거래량의 30% 이상 매수 금지

■ 매매수수료 : 로스컷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자동반대매매시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 적용

대출 가능액	▶ 최대금액 = {주식잔고 평가금액 + (D+2일)예수금} × 대출비율								
	※ 대출비율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담보평가금액</th><th>대출비율</th></tr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300%</td></tr> <tr> <td>1억원 이하</td><td>250%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200%</td></tr> </table>		담보평가금액	대출비율	5천만원 이하	300%	1억원 이하	250%	1억원 초과	200%
담보평가금액	대출비율								
5천만원 이하	300%								
1억원 이하	250%								
1억원 초과	200%								
※ 대출신청 전 매수금지종목 기 보유한 경우, 주식잔고평가금액에서 제외									
담 보 비 율	▶ {(주식잔고 평가금액) + (D+2일)예수금} / 대출원금 × 100								
현금 인출	현재가 기준, ① 담보율이 135% 초과한 현금 ② (D예수금-증거금-제세금-수수료), (D+2예수금-증거금-제세금-수수료)중 적은금액 ③ 인출후 최대보유종목비중이 70%가 되는 금액 이상의 ① ② ③ 중 작은금액이 출금가능한 금액임								

2. 자동반대매매규칙

자동반대매매 발생 사유	자동반대매매 시기
① 장후종가기준 계좌담보비율이 120%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:50까지 담보율 120%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	- 오전 동시호가부터
② 보유주식 중 관리/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	- 편입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- 편입예정종목 전부 반대매매
③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전전일(기준일 3일전)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- 권리락전일(기준일 2일전) 동시호가부터 - 권리락 발생 전종목 반대매매
④ 주식감자/주식병합/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	- 기준 2일전 오전동시호가부터
⑤ 대출해지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(연장조건미달/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	- D+3일 사이 반대매도

로스컷 (자동매도)	▶ 로스컷(시스템에 의한 매도)이 발생하는 경우 ① 장후종가기준 120%미만 도달 계좌 중 익일 오전 08:50분까지 담보비율 120%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대출해지(연장조건미달/만기경과/기한이익상실)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▶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로스컷 발생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고객은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. (단, 담보율 보강을 통하여 정상계좌로 환원될 경우, 기한의 이익 부활.) ▶ 반대매매 실행 ① 반대매매 범위 :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하한가로 수량 계산하여 시장가로 반대매매 실행 ② 반대매매 순서 : 1)매수불가 종목 2)시가총액 상위종목 ※ 반대매매 주문 후 5분간 미 체결시엔 차순위 종목 반대매매 실행 ※ 반대매매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실시됩니다. ▶ 로스컷 경고 SMS ※ 로스컷 관련 SMS는 다음의 경우에 발송됩니다 - 장중 : 계좌 담보비율 125%이하 도달시 - 장중 : 담보비율이 120%에 미달되어 매수정지시 - 장종료후 : 계좌 담보율 120% 미만시 16:00, 17:00에 발송 - 반대매매 실행 당일 : 계좌 담보율 120% 미만시 08:00에 발송 - 반대매매 실행 : 실행 즉시 발송 단, 장중 경고 SMS의 경우, 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통신사 등의 사정으로 SMS발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▶ 매수거래 정지 ① 장중 담보비율이 120%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
---------------	---

	② 매수거래 정지 후 장중 담보비율 120% 이상이면 매수가능 ▶ 기타 주의 사항 ① 로스컷 발생한 증권계좌는 매매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. ② 대출상환 : 로스컷 발생 후 상환 유예기간 경과시 대출 상환 (원리금 일괄 청구 방식, 금액 부족시 일부 상환) ③ 로스컷으로 대출약정 해지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만큼 입금하여야 하며, 손실금액 미입금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계속 적용됩니다. ▶ 계좌부활(상환유예) : 로스컷 실행 후 현금 입금되는 경우 - 로스컷 발생 후 D+2일 오후 3시까지 현금 입금 및 주식 입고로 담보율이 120% 이상일 경우 정상계좌로 부활 (대우해피론 서비스 계속 이용) ※ 고객이 다수의 증권계좌를 보유하신 경우 질권계좌의 로스컷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부족할 경우, 타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로스컷 실행 ※ 제3자가 증권계좌에 (가)압류 조치한 경우 → 거래중지 및 기한의 이익상실
--	---

3. 대출약정 및 연장 / 상환 / 해지 규정

신규약정 채결	□ 약정 채결 조건						
	① 신용평가기관 CB등급 1-8등급 해당 고객 → 금융환경 및 신용환경 변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운용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② 개인만 가능하며, 법인 및 외국인은 약정 불가 ③ 만 19세 이상 성인 ④ 동일인 여신한도 3억원 이내 ⑤ 증권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, 최소 대출신청금액 300만원 이상인 고객 ⑥ 증권계좌에 대해 온라인 질권설정을 완료한 고객 ⑦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아닐 것 ⑧ 개인회생/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⑨ 신용회복지원(프리워크아웃 포함) 대상자가 아닐 것 ⑩ 공공정보 등록된 자(채납정보 등)가 아닐 것 ⑪ 증권계좌에 보유불가종목이 없어야 하며 보유시 매도 후 대출 신청 가능						
	□ 질권 설정 신청 방식						
	고객이 당행 대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(공인인증서/전자서명)						
연 장	□ 대출 조건						
	- 2018년 08월 10일 ~ 신규가입고객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26 790 544 853"> <tr> <th>구분</th><th>대출금리</th><th>연장시 금리</th></tr> <tr> <td>해피C</td><td>6.2%</td><td>6.9%</td></tr> </table>		구분	대출금리	연장시 금리	해피C	6.2%
구분	대출금리	연장시 금리					
해피C	6.2%	6.9%					
- 2018년 07월 02일 ~ 2018년 08월 09일 신규가입고객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26 914 544 978"> <tr> <th>구분</th><th>대출금리</th><th>연장시 금리</th></tr> <tr> <td>해피C</td><td>6.9%</td><td>6.9%</td></tr> </table>		구분	대출금리	연장시 금리	해피C	6.9%	6.9%
구분	대출금리	연장시 금리					
해피C	6.9%	6.9%					
- 연체금리 : 약정이자 +3% - 대출기간 : 6개월 (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) - 대출가능금액 : 계좌 담보평가금액의 300% 이내 (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차등) -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 - 상환방식 : 만기일시상환 (중도상환 가능)							
연 장	① 연장조건 : 아래 연장조건에 결격사유 없을 경우, 연장 가능 - 신규약정채결조건 ① ~ ⑩ 해당고객 - 약정만기일(0일 16:00) ~ 0-7일(영업일 기준) 사이에 온라인 연장신청고객 -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0% 이상일 경우						
	② 기타사항 - 약정 만기일 16:00까지 연장신청 하지 않을 경우 자동해지처리 - 자동해지시 대출원금과 대출 만료일까지의 이자를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정상 해지 됨. - 만기연장 신청의 취소 RMS이용료(연장시) 환불은 불가능함. - 관련 법률 및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심사 등에 의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						

일부상환	① 일부상환 조건 - 증권계좌 (출금가능)예수금이 일부상환액 이상인 경우 - 일부 상환시 정리 순서 : 연체료/연체이자 → 대출원금 ※ 일부상환 후 대출잔액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함 (대출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상환만 가능) ② 일부상환 가능금액 - 대출잔액 5백만원 이하 : 일부상환 가능금액 없음. - 대출잔액 5백만원 초과 : 일부상환 가능금액 = 대출잔액 - 5백만원 (대출잔액은 일부상환 전 대출잔액을 의미함) ③ 일부상환 방법 - 당사 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 - 신청가능시간 : 오전 8시 ~ 오후 4시 - 증권계좌 (출금가능)예수금이 일부상환 신청액 보다 작을 경우 상환 불가 ※ 일부상환시 대출한도는 일부상환 금액만큼 하향조정됩니다.		
해 지	▶ 해지사유 ① 약정만기일 도래 : 연장미신청 또는 연장신청 부결된 경우 ② 고객중도해지 요청 또는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제5조(자금의 사용)위반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경우 ④ 담보비율 120%미만으로 인한 로스컷된 경우 ▶ 대출해지/원금상환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약정 및 증권계좌질권설정 자동해지 ▶ 담보처분 후 고객의 미 상환 대출원금 발생시에 (주)유캔그린(위험관리시스템 제공업체)이 대위 변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(주)유캔그린은 고객님의 대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		
이자납입	① 이자납입일 - 대출실행 익월부터 매 1개월마다 대출 실행일 ② 이자납입방법 - 이자 납입일에 고객님의 증권 계좌에서 자동 출금 - 증권계좌의 (출금가능)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출금 불가능(전액출금방식) ③ 담보율 122% 미만이면 이자 출금 없이 연체 처리 됨. (이자출금에 따른 로스컷 방지)		
증액대출	- 담보평가액에 따라 대출한도 증액 가능 - 증액대출의 경우 대출잔액을 제외한 모든 약정 내용이 원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(대출금리, 대출만기 등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잔존 대출 일수를 감안하셔서 신청 바랍니다.)		
인지세 과세	- 대출실행 시 대출금액별 인지세 과세 (인지세법 제 3조 제3항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기재액</td><td>세액</td></tr> </table>	기재액	세액
기재액	세액		

	5천만원 이하	비과세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만원
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※ 신규대출 및 추가대출(기존고객 포함)을 하실 경우 총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과세됩니다. ※ 2011년 8월22일부터 발생하는 인지세는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		

※ 위 계좌운용규칙 및 기본약관은 관련 법규 및 모범기준의 신설 또는 개정 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